

2008년도 가스안전교육 실시안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31(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9·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4)에 의거 2007년도 가스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1. 과정·인원·시간 및 일정

구분	교육인원	시간	교육일정
시공자	280	38	1기:2.12~2.19 2기:4.14~4.18 3기:5.26~5.30 4기:6.16~6.20 5기:7.28~8.1 6기:9.22~9.26 7기:10.27~10.31
온수보일러 시공자	240	30	1기:3.3~3.7 2기:3.24~3.28 3기:6.9~6.13 4기:7.7~7.11 5기:9.8~9.12 6기:10.6~10.10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	30	30	1기:5.19~5.23

2. 교육장소

- 가스안전교육원(충남 천안시 목천읍 소재)
- 지역본부(지사) : 전문·특별교육중 지역본부(지사)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3.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08. 1. 7(월)부터 접수예정(※ 교육과정·일정별 정원초과시 다음 희망일정에 접수가능하며 인터넷접수도 가능함)

나. 접수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가스안전교육원 및 27개 지역본부(지사)

4. 교육대상 및 수강자격(양성교육)

가. 교육대상

- 1) 양성교육 : 가스시설의 안전관리자 등으로 근무하고자 하는자

나. 수강자격(양성교육)

- 1)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정규과정, 냉동시설안전관리자 정규과정,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정규과정,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안전관리자, 판매시설안전관리자,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운반책임자, 안전점검원 및 폴리에틸렌관 융착원 과정 : 자격제한 없음
- 2) 일반시설안전관리자 특별과정, 냉동시설안전관리자 특별과정 및 가스시설시공관리자 특별과정 : 수강자격시험 합격자
- 3) 시공자 과정
 - ▷ 가스기능사이상 및 고압가스기계·화학·취급기능사보의 자격을 가진 자
 - ▷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4) 온수보일러시공자 과정
 - ▷ 가스기능사 이상, 고압가스기계·화학·취급기능사보 또는 온수온돌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
 - ▷ 일반시설안전관리자,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안전관리자, 판매시설안전관리자, 사용시설안전관리자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 시공업 등록자
- 5)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 과정 :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 시공업의 기술능력을 가진 자
- 6) 교육신청시 구비서류등(공통사항 : 교육비)
 - ▷ 양성교육
 - 수강신청서(공사소정양식) 1부.
 - 최근3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사진 2매.
 - 관련 국가기술자격증(교육이수증포함)사본 또는 수강자격시험 합격증 사본(교육과정별 해당자에 한함) 1부.
 -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 시공업등록증 사본 (온수보일러시공자 · 시공관리자과정의 해당자에 한함) 1부.
 - 제출서류원본(자격증, 교육이수증, 수강자격시험합격증 등) 및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

5. 양성교육 유의사항

가. 총 교육시간의 90% 이상을 출석하고, 시험평가 결과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양성 교육 이수증을 교부.

나. 양성교육 수강후 이수시험에 불합격 또는 이수시험에 응시하지 못한자의 재시험응시 유효기간은 교육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공사가 정한 재시험 일까지임.

다. 교육이수자에 대한 무효조치

- ▷ 양성교육 이수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해과정의 교육이수를 무효로 함
 - 양성교육이수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 양성교육이수증과 관련하여 이중취업을 한 경우
 - 부정행위 또는 허위서류 제출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 양성교육 이수(재)시험 및 수강자격시험에 대리

응시한 경우에는 이수한 전과정의 교육을 무효로 함

6. 수강자격시험

- 가. 시험일정 및 인원 : 양성교육일정중 일반시설안전 관리자, 냉동시설안전관리자 및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시험란 참조
- 나. 시험장소 : 가스안전교육원(천안시 목천읍 소재)
- 다. 원서접수기간 및 접수처 : 양성교육과 동일
- 라. 응시원서 접수시 구비서류 :
- 1)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 2) 최근3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사진 1매
 - 3) 응시 수수료 : 10,000원

- 마. 시험범위 및 출제형식 : 해당과정 교재 이론교육내용 중에서 4지 선택형으로 출제
- 바. 합격자 결정 : 총점을 100점으로 하여 평가결과가 60점 이상인 자

- 사. 합격자 주의사항 : 수강자격시험 합격자의 해당 특별과정 수강신청 유효기간은 합격일로부터 1년임

7. 양성교육 과정별 교육대상

▷ 시공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의 기술능력 또는 건설기술자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

▷ 온수보일러 시공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의 기술능력 또는 건설기술자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

▷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의 건설기술자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

8. 과정별 교육비

▷ 시공자 : 254,000 원

▷ 온수보일러 시공자 : 200,000 원

▷ 온수보일러 시공 관리자 : 200,000 원

9. 기타

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양성교육 및 수강자격시험 참석시 신분증, 계산기,

필기도구(컴퓨터용싸인펜 포함) 필히 지참

다. 고용보험 납부업체에서 교육을 수강한 경우, 근로
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거 정부(노동부)로 부터 교
육비의 일부가 환급됨 (대기업 : 2일 16시간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에
한함)

라. 교육비의 유효기간은 신청연도를 기준으로 다음연
도 말일까지 수강이 가능하며, 환불은 교육신청일
로부터 1년이내에 공사(교육신청지)에 환불요구서
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비를 환불함.

마. 수강자격시험 응시수수료 환불은 시험당일 전날까
지 환불요구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환불함.

바. 생활관 편의 제공(교육당일 출석등록후 개별신청)
단, 생활관 수용인원 초과시는 선별수용

교육장소	생활관사용료	식비	비고
교육원(천안)	10,000원/1박	3,500원/1식	숙식비는 변 동될 수 있음

★ 교육과정별 접수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 교육
일정이 변경(폐강포함)될수 있습니다.

※ 교육문의 및 접수처

가스안전교육원 홈페이지 참조 :

한글 가스안전교육원 또는 www.igtt.or.kr

전국단일전화(1544-4500) 및 전국 27개 지역본부
(지사)

▷ 서울지역본부 (02)3411-2081

▷ 서울서부지사 (02)393-0795

▷ 서울남부지사 (02)843-0019

▷ 서울동부지사 (02)2217-8611

▷ 부산지역본부 (051)646-0019

▷ 부산북부지사 (051)503-0019

▷ 대구·경북지역본부 (053)588-0019

▷ 인천지역본부 (032)435-1525

▷ 광주·전남지역본부 (062)383-0019

▷ 대전·충남지역본부 (042)485-0019

▷ 울산지역본부 (052)247-0019

▷ 경기지역본부 (031)259-3500

▷ 경기북부지사 (031)878-0019

▷ 경기서부지사 (032)345-0019

▷ 경기동부지사 (031)798-0019

▷ 강원지역본부 (033)254-0019

▷ 강원영동지사 (033)643-0019

▷ 충북지역본부 (043)268-0019

▷ 충남북부지사 (041)561-0019

▷ 전북지역본부 (063)276-0019

▷ 전남동부지사 (061)682-0019

▷ 전남서부지사 (061)283-0019

▷ 경북동부지사 (054)284-0019

▷ 경북북부지사 (054)854-0019

▷ 경남지역본부 (055)212-1700

▷ 경남서부지사 (055)746-0388

▷ 제주지역본부 (064)748-0019

